

# 충남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시행세칙

[제정 2013. 2. 22.]

1차 개정 2014. 11.03.

2차 개정 2015. 4. 20.

**제1조(목적)**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(이하 “규정” 이라 한다)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토목공학과(이하 “학과” 라고 한다)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论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.

**제3조(논문제출자격)**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논문제출자격시험의 방법, 응시절차 및 자격요건)** ① 논문제출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33조와 다음 각호에 의한다.

- 1.(응시절차) 학위청구논문(이하 “논문”이라 한다)의 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2.(시험과목) 자격시험은 전공에 대하여 실시하며 자격시험의 교과목은 전공에서 정하되, 석사학위과정은 2과목 이상으로, 박사학위과정과 석·박사통합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 한다.
- 3.(시험출제기준) 자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.
- 4.(출제위원 및 채점위원) 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 중에서 2인 이상을 학과 주임교수가 위촉하며 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- 5.(합격기준) 전공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불합격된 자는 다음 학기 이후 시험에 재응시 할 수 있다.

② 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.

**제5조(논문지도위원회)** ①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 위원회를 둔다.

- ②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,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 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.
- ③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지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발표하여야 하며,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.

**제6조(외국어 능력기준)**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. (개정 2015. 4.20)

- 1. TEPS 476점 이상
- 2. TOEIC 550점 이상
- 3. TOEFL(CBT) 163점 이상
- 4. TOEFL(iBT) 57점 이상
- 5.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
- 6. 단, 위 공인성적을 제출하지 못할 시에 별도의 영어능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어능력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.

**제7조(학술지게재 의무조건)** ①박사학위과정은 국내전문학술지(등재) 이상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한다.
- 2.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한다.
- 3.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.
- 4. 학위청구논문 제출일을 포함하여 박사학위과정 입학 후 제출한 실적만 인정한다.

②박사학위과정은 국내학술회의 학술발표 이상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.(조신설 2014. 11. 3)

- 1.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한다.
- 2.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한다.
- 3. 학위청구논문 제출일을 포함하여 박사학위과정 입학 후 제출한 실적만 인정한다.

**제8조(시행세칙의 개정)**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시행세칙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## 부 칙(2014. 11. 3.)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시행세칙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## 부 칙(2015.4.20.)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외국어능력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 세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해 종전 시행규칙을 따를 수 있다.